

2021년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자체종합감사 결과

1. 감사범위 : 2020. 7. 1 ~ 2021. 8. 31

2.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총건수	합 계		징계	시정	주의 (경고)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8	17	3,289	-	2	5	5	1	1	1

3. 지적 및 처분요구 사항

순번	처분요구	지적사항	담당부서
1	통보	의원면직 업무처리 부적정	인사총무실
2	개선	인사운영 및 계약 관련 규정 정비 미흡	인사총무실 인재교육총괄실
3	개선·권고	연차유급휴가 및 초과근로 관련 인사관리 제도 개선	인사총무실
4	시정·주의	외부강의등 신고처리 부적정	인사총무실 준법지원팀
5	주의	제한경쟁입찰 시 참가자격제한 기준 부적절	인사총무실 인프라운영팀
6	주의·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미시행	인사총무실 인프라운영팀
7	주의·개선	기관고유사업 관리 미흡	기획조정실
8	시정·주의·개선	기관고유사업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 부적정	인사총무실

4. 세부지적 내용

처분요구	지 적 내 용
통보	<p><input type="checkbox"/> 의원면직 업무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내용) 「인사세칙」 및 「징계요령」에 따라, 비위 혐의로 형사사건에 기소된 직원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의원면직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대상기간동안 총 6명을 제한 사유에 대한 확인 없이 의원면직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됨. ○ (조치 사항) 의원면직자에 대한 퇴직 업무 처리 시, 제한 사유 미해당에 대한 확인 절차를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하시기 바람.

처분요구	지 적 내 용
개선	<p>□ 인사운영 및 계약 관련 규정 정비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내용) 기획재정부 「경영지침」 개정으로 승진의 제한(제22조)조항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포상의 제한)에 관한 내용도 「인사세칙」에 규정하지 않음. 또한, 「교육운영지원 용역사업 단가계약 관리지침」의 경우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처리 지침」 및 내부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지침」 보다 평가위원 수를 축소 시행하고 있어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조치 사항) 「인사세칙」과 「교육운영지원 용역사업 단가계약 관리지침」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람.
개선·권고	<p>□ 연차유급휴가 및 초과근로 관련 인사관리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내용) 「혁신지침」 제37조와 제42조에 따라 휴가제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야 하나, 입사 전 유사경력 인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년 이상 재직할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직원들 연차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차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조치 사항) 입사 전 유사경력자의 유급휴가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복무세칙」을 개선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실질적 사용을 보장하여 근로자 휴식권·건강권을 높일 수 있는 근로문화 혁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시정·주의	<p>□ 외부강의등 신고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내용)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사례금 또는 출장비 중 1개 이상의 대가를 수령하여 강의 등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받지 아니해야 하나,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면서 신고기한 미준수 및 사례금(교통비)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조치 사항) 외부강의등을 유급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건에 대하여 출장비 36,67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외부강의 지연신고 및 사례금(교통비) 중복 수령 관련자(2명)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주의	<p>□ 제한경쟁입찰 시 참가자격제한 기준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내용) 제한경쟁입찰 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물품 및 용역 고시금액 2억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할수 있고,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소재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고시금액 2억 1천만원 보다 미만인 계약에도 실적의 금액에 따라 제한 경쟁에 참가할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지역 제한을 중복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소재지 (충북, 충남, 대전)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과소하게 제한한 사실이 확인됨. ○ (조치 사항)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처분요구	지 적 내 용
주의·개선	<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미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용역에 대하여 제한경쟁 입찰에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조치 사항) 용역 및 구매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업무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제한경쟁 입찰 시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주의·개선	<p>□ 기관고유사업 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내용) 「혁신법」에 근거하여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과제 선정에서 연구기획·평가성과관리 등 기관고유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내부규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세부 연구분야 또는 세부사업(과제)으로 나누지 않고 소수의 사업 책임자로 한정하여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투명한 사업비 진행이 곤란하고, 사업책임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우려됨. ○ (조치 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업비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기관고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시정·주와 개선	<p>□ 기관고유사업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내용) 회의비 집행 시 1인 3만원 기준을 준수하고, 기관고유 및 일반사업 중식비의 경우 외부인원이 참석하여야 집행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외부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후 실제 회의비 집행 시에는 외부인원 없이 내부인원만 참석하거나, 1인당 회의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지적 내용) 부적정하게 집행한 회의비 3,251,87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9명)에게 주와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내외부인 소속 구분,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과 실제 회의비를 집행한 인원이 구분되도록 회의록 작성 기준을 개선하기 바람.

5. 모범사례

구분	지 적 내 용
통보	<p>□ 채용시스템 전면개편 및 바른채용경영시스템 인증 획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성과) 직군별 맞춤형 채용제도를 수립하여 효과적인 인재선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바른채용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채용제도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 (조치 사항)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채용업무 담당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람